

『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』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모집공고

경기도(경기경제자유구역청)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자구역 입주기업의 조기/안정적 시장진출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『수요맞춤형 지원사업』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0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목적

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화 및 조기/안정적 시장진출을 지원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『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』 수요맞춤형 지원
- 주관기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
- 접수기간 : '26. 3. 23(월) ~ 4. 10(금)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5개월 내외
- 지원분야 : 시장진출(출시) 등 사업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('3. 지원분야 및 절차' 참조)
- 사업예산 : 기업당 정부지원금 20백만원(VAT제외),
기업현금부담금 4백만원(정부지원금 기준 20%)
- 지원규모 : 총 14개사 내외

□ 지원대상 :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-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중소기업(입주예정자 포함)
 - 구역범위 : 평택 포승/현덕지구, 시흥 배곧지구, 안산 사이언스밸리
- 경자구역내 본사 또는 공장, 부설연구소, 지사(경자구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)가 소재하는 중소기업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 - 본 사업 선정 이후, 경기도 관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, 선정을 취소함 (단, 본사 또는 공장, 부설연구소, 지사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소재 시 선정 유효)

3. 지원분야 및 절차

□ 지원분야

지원분야	세부내용
지식재산권	(국내·외)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 출원 및 컨설팅
디자인개발	제품디자인, 브랜드(BI, CI 등)디자인, UX·UI 디자인, 디자인 구조설계 등
컨설팅	경영/기술전략 컨설팅(경영/인사/노무/법무/세무, 생산관리, 인증, 기술/특허전략 등)
	중대재해 예방 컨설팅(위험성 평가, 공정안전관리, 화학물질관리 등)
	ESG 경영 컨설팅(ESG기본사항, 탄소배출량 진단, 취약공정 개선방안 도출 등)
	기타 컨설팅(투자유치·IR, 정부과제 참여전략 컨설팅 등)
신뢰성검증	생산 제품 및 부품 등의 시험분석/인증/실증 등
마케팅	카달로그/홈페이지/홍보영상 제작, 전문잡지 광고 등 기업 홍보 활동
전시회 참가	국내·외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료, 기본 장치비, 전시품 운송비, 통역비 등 지원
기타	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여부 결정

- ※ 시제품제작 · 부품 및 재료구입 · 인건비 · 사무용품비 · 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
- ※ 본 사업 종료일까지 시험분석/실증/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
- ※ 과제 비용내 회계정산비를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회계정산보고서 함께 제출

□ 지원절차

구분	일정	내용	주관
사업공고 및 접수	3. 20(금) ~ 4. 10(금)	사업공고 및 이메일 접수	신청기업→경기TP
↓			
서류검토	접수일 ~ 4. 15(수)	서류검토 및 보완요청	경기TP→신청기업
↓			
선정심사	4월 말	선정심사위원회 개최	경기TP
↓			
협약체결	5월 초	선정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	경기TP↔선정기업
↓			
사업비 교부	5월 중	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비 교부	선정기업→경기TP 경기TP→선정기업
↓			
사업수행	협약 체결일 ~ 10. 31	중간점검 (협약체결기간 중간시점)	경기TP→선정기업
↓			
결과보고서 제출	협약 종료일 ~ 2주	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	선정기업→경기TP
↓			
최종평가	협약 종료일 ~ 2주	최종평가위원회 개최(서면)	경기TP
↓			
사후관리	지속	투자유치 및 사업화 연계지원	경기TP→선정기업

4. 선정기준 및 방법

□ 선정기준

평가 항목	내용	점수
지원의 적합성	- 지원의 필요성 - 사업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업의 역량·의지	20
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	-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- 수행계획(사업추진 내용)의 적정성 - 수행계획(사업비 구성)의 적정성	40
실현 가능성	- 일정별(사업기간 고려) 추진 내용의 실현 가능성 - 조기/안정적 시장출시(진출) 가능성	20
경제적 파급 효과	- 시장규모 및 매출/수출/고용창출 등 기대효과	20

□ 선정방법
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: 3인 이상의 내·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
- 선정방법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
- 선정기준
 - 평균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사업비 조정결과 잔여예산 발생시, 기선정 기업의 지원 포기 또는 부적격 사유 발생시 별도의 선정심사 없이 60점 이상의 차순위 예비 기업을 선정
- 선정통보 :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

□ 사업비 교부

- 선정기업은 사업비 교부신청서 및 ‘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’ 제출
- 경기TP에서 선정기업에 사업비 교부

5. 신청접수 및 문의처

□ 신청접수

- 접수방법 :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(<http://pms.gtp.or.kr>)
 - ①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→ 중앙부 하단 사업공고 클릭
 - ②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→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
- 제출서류 : 제출서류 일체는,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

연번	제출서류	제출여부	비고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필수	제공서식
2	사업자등록증명	필수	홈택스
2-1	공장등록증명	해당시	정부24
3	국세완납증명	필수	홈택스
4	지방세 납세증명서	필수	정부24
5	중소 / 중견기업확인서	필수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/ 한국중견기업연합회
6	서약서	필수	제공서식
7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활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8	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9	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확인서	필수	제공서식
10	최근2개년 재무제표(2024년, 2025년)	필수	홈택스 등
11	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계약서(입주 예정자에 한함)	필수	-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이메일	연락처
(재)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	최경관 과장	kkchoi@gtp.or.kr	031-500-3050

6. 신청시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사항

- 2026년에 경자구역 외부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(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)
- 동일한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정부, 지자체, 조합, 단체, 정부 산하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
-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, 법정관리, 휴·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
-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
-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,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-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

□ 기타 행정사항

- 신청인(신청기업)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(신청기업)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- 적용법률
 - ↳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↳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↳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↳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- 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“[참고]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” 참고

경기도 고시 제2026-8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8.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제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 나.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붙임 1)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
다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4)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

- 단,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,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다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도·시군 조회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
-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)

붙임 1. (유예대상 목록) 47개 법위반 행위목록

2. (서식1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3. (서식2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

4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

5. (서식4)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